

# 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-1758호

##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49(2010.12.09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-43(2013.06.13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-71(2018.07.05.)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91(2022.09.29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도서가 제출 되었기에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,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2.11.10. ~ 2022.11.25.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 도시계획과 (☎ 02-351-7424)
- 2)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04-7798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(면적 : 112,804.2㎡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명 :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고영태)
  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155, 1층(증산동)
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60개월
- 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3년 6월 13일
- 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28개동 1,694세대(임대 292세대포함), 지하4층/지상30층 및 부대복리시설
- 7) 변경내용
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-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2개월
-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60개월

※ 변경사유 :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완료 소요기간 등 반영

-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

- 변경 전 :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59-2, 1층
- 변경 후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155, 1층(증산동)

※ 변경사유 : 조합사무실 변경 내역 반영

- 구역면적 변경

- 변경 전 : 112,694.3㎡
- 변경 후 : 112,804.2㎡

※ 변경사유 : 측량결과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

- 건축계획 변경

| 구분       | 변경전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건축면적     | 15,690,080㎡  | 15,690,080㎡  | 변경 없음       |
| 연면적      | 271,736.920㎡ | 270,855.459㎡ | 881.461㎡ 감소 |
| 용적률      | 263.59%      | 262.09%      | 1.5%p 감소    |
| 59A형-1단지 | 148세대        | 139세대        | 9세대 감소      |
| 84A형-1단지 | 366세대        | 365세대        | 1세대 감소      |
| 세대수      | 1,704세대      | 1,694세대      | 10세대 감소     |
| 층수/높이    | 지하4층 ~ 지상30층 | 지하4층 ~ 지상30층 | 1~3개층 감소    |
|          | 110동, 109동   | 110동, 109동   |             |

※ 상기 내역은 오기, 착오,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

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2) 공람도서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